

 <p>거창군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 style="font-size: 48px; margin: 0;">공 보</h1> <p style="font-size: 24px; margin: 0;">제898호 2023. 2. 8.(수)</p>	
---------------------------------------------------------------------------------------------------------------------------------------------------	------------------------------------------------------------------------------------------------------------------	-------------------------------------------------------------------------------------

선 결	기관 의 장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23-21호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2
거창군 고시 제2023-22호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고시	17
거창군 고시 제2023-24호	도로명주소 고시	18
거창군 고시 제2023-25호	도로구간 변경 고시	19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23-208호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2
거창군 공고 제2023-237호	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관련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공고	37
거창군 공고 제2023-243호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공고	44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3-11호	「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56
거창군 거창읍 공고 제2023-5호	거창읍 공중화장실 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65

회 략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 고시 제2023 - 21호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23-17호(2023. 1. 19.)로 고시된, 거창군 행정구역 일원의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도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는 거창군청(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2월 8일

거 창 군 수

1.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참조
2. 관계도면 : 실음 생략(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

[붙임] 거창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804,144,882	-	804,144,882	100.00	
주거 지역	소 계	4,873,879	-	4,873,879	0.61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1,462,455	-	1,462,455	0.18	
	제2종일반주거지역	3,121,743	-	3,121,743	0.39	
	제3종일반주거지역	196,057	-	196,057	0.02	
	준주거지역	93,624	-	93,624	0.01	
상업 지역	소 계	347,740	-	347,740	0.04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347,740	-	347,740	0.04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공업 지역	소 계	1,575,167	-	1,575,167	0.20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1,546,725	-	1,546,725	0.19	
	준공업지역	28,442	-	28,442	0.01	
녹지 지역	소 계	25,413,400	-	25,413,400	3.16	
	보전녹지지역	1,654,760	-	1,654,760	0.21	
	생산녹지지역	7,711,971	-	7,711,971	0.96	
	자연녹지지역	16,046,669	-	16,046,669	2.00	
관리 지역	소 계	261,848,162	증)1,781,741	263,629,903	32.78	
	보전관리지역	171,787,049	증)1,588,549	173,375,598	21.56	
	생산관리지역	8,261,516	증)137,156	8,398,672	1.04	
	계획관리지역	81,799,597	증)56,036	81,855,633	10.18	
농림지역		469,382,239	감)1,781,741	467,600,498	58.15	
자연환경보전지역		40,704,295	-	40,704,295	5.06	
미지정		-	-	-	-	

※ 기정은 경상남도 고시 제2022-689호(2022.12.29., 거창 첨단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임.

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총괄 조서

구분	합 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면적 (㎡)	개소수 (개소)	비율 (%)	면적 (㎡)	개소수 (개소)	비율 (%)	면적 (㎡)	개소수 (개소)	비율 (%)	면적 (㎡)	개소수 (개소)	비율 (%)
합 계	1,781,741	106	100.0	1,588,549	91	89.2	137,156	7	7.7	56,036	8	3.1
거창읍	83,335	5	100.0	65,917	3	79.1	-	-	-	17,418	2	20.9
주상면	99,055	14	100.0	99,055	14	100.0	-	-	-	-	-	-
용양면	5,965	5	100.0	5,607	4	94.0	358	1	6.0	-	-	-
고제면	165,508	8	100.0	165,508	8	100.0	-	-	-	-	-	-
북상면	71,718	6	100.0	71,718	6	100.0	-	-	-	-	-	-
위천면	41,462	2	100.0	41,462	2	100.0	-	-	-	-	-	-
마리면	212,146	3	100.0	212,146	3	100.0	-	-	-	-	-	-
남상면	501,374	22	100.0	418,630	18	83.5	82,275	2	16.4	469	2	0.1
남하면	98,289	12	100.0	85,482	9	87.0	3,780	1	3.8	9,027	2	9.2
신원면	139,452	7	100.0	139,452	7	100.0	-	-	-	-	-	-
가조면	197,766	15	100.0	146,978	11	74.3	21,666	2	11.0	29,122	2	14.7
가북면	165,671	7	100.0	136,594	6	82.4	29,077	1	17.6	-	-	-

다. 용도지역별 결정(변경) 사유서

1) 거창읍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거창읍 동변리 829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36,550	100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함
2	거창읍 동변리 1188번지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322	8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써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함
3	거창읍 학리 136-2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29,045	80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함
4	거창읍 동변리 659번지 일원	농림 지역	계획 관리지역	3,353	10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써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 으로 변경함
5	거창읍 양평리 1086-3번지 일원	농림 지역	계획 관리지역	14,065	10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 으로 변경함

2) 주상면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주상면 완대리 1297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14,620	8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함
2	주상면 완대리 302-3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8,083	80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함
3	주상면 내오리 산99번지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1,365	80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함
4	주상면 내오리 187번지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41	8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함
5	주상면 연교리 산208-1번지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282	80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함
6	주상면 성기리 639-1번지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869	80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함
7	주상면 성기리 1343-1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17,100	8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함
8	주상면 거기리 산14-2번지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415	80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함
9	주상면 거기리 1048-1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1,446	8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함
10	주상면 거기리 811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8,850	80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함

2) 주상면(계속)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1	주상면 남산리 250-5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171	8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함
12	주상면 거거리 350-1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13,454	8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함
13	주상면 거거리 359-1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12,843	8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함
14	주상면 거거리 515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19,516	8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함

3) 용양면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용양면 신촌리 82-1번지	농림 지역	생산 관리지역	358	8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함
2	용양면 산포리 1974번지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638	8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함
3	용양면 산포리 960-1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2,469	8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함
4	용양면 산포리 1144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1,539	8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함
5	용양면 죽림리 319-3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961	8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함

4) 고제면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고제면 봉산리 595-1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4,043	8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함
2	고제면 봉산리 704-1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15,705	8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함
3	고제면 봉산리 785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15,202	8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함
4	고제면 봉산리 846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28,424	8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함
5	고제면 궁항리 710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21,656	8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함
6	고제면 궁항리 887-1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34,830	8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함
7	고제면 궁항리 970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29,445	8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함
8	고제면 농산리 369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16,203	8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함

5) 북상면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북상면 소정리 1438번지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199	80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함
2	북상면 소정리 341-1번지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86	80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함
3	북상면 병곡리 40-1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61,856	8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함
4	북상면 월성리 1046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1,059	80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함
5	북상면 월성리 421-2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8,160	80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함
6	북상면 월성리 408번지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358	80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함

6) 위천면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2	위천면 당산리 701-1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8,530	80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 지역으로 변경함
4	위천면 당산리 295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32,932	8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함

7) 마리면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 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마리면 영승리 21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191,845	8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함
2	마리면 영승리 63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19,832	80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함
3	마리면 대동리 388-1번지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469	8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함

8) 남상면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남상면 대산리 841번지 일원	농림 지역	생산 관리지역	52,798	80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함
2	남상면 대산리 961-5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162	8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함
3	남상면 대산리 864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80	8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함
4	남상면 대산리 961-2번지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268	8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함
5	남상면 대산리 1378-3번지	농림 지역	계획 관리지역	39	10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 으로 변경함
6	남상면 대산리 1378번지	농림 지역	계획 관리지역	430	10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 으로 변경함
7	남상면 무촌리 344-1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3,538	80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함
8	남상면 무촌리 750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3,058	80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함
9	남상면 무촌리 1077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13,145	80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가 해 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 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 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 지역으로 변경함
10	남상면 무촌리 126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58,957	80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함

8) 남상면(계속)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1	남상면 오계리 456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18,558	8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함
12	남상면 둔동리 1608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15,553	8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함
13	남상면 둔동리 1-1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43,466	8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함
14	남상면 전척리 632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15,310	8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함
15	남상면 전척리 624-1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29,815	8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함
16	남상면 임불리 1061번지 일원	농림 지역	생산 관리지역	29,477	8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 으로 변경함
17	남상면 둔동리 694-8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22,978	8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함
18	남상면 둔동리 647-1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41,653	8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함
19	남상면 둔동리 537-1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14,120	8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함
20	남상면 진목리 188-1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31,820	80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함

8) 남상면(계속)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21	남상면 진목리 533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12,248	8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함
22	남상면 진목리 294-4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93,901	8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함

9) 남하면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남하면 둔마리 709-2번지	농림 지역	계획 관리지역	139	10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함
2	남하면 둔마리 789-1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526	80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함
3	남하면 둔마리 1543번지 일원	농림 지역	계획 관리지역	8,888	10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함
4	남하면 양항리 산44-1번지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424	80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함
5	남하면 양항리 산44-1번지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38	80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함
6	남하면 양항리 1035-2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13,110	8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함
7	남하면 양항리 1043-2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53,532	80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함
8	남하면 무릉리 산254번지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37	80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함
9	남하면 무릉리 662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5,447	8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함
10	남하면 무릉리 1668번지 일원	농림 지역	생산 관리지역	3,780	8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함

9) 남하면(계속)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1	남하면 지산리 산54-10번지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546	80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함
12	남하면 지산리 136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11,822	8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함

10) 신원면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신원면 덕산리 472-1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55,795	80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함
2	신원면 청수리 71-1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16,121	8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함
3	신원면 과정리 931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19,055	8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함
4	신원면 양지리 1050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1,623	8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함
5	신원면 양지리 837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8,884	80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함
6	신원면 양지리 101-8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16,712	8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함
7	신원면 수원리 861-1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21,262	8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함

11) 가조면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가조면 사병리 1299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782	8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함
2	가조면 사병리 1263-10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23,093	8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함
3	가조면 장기리 1177-5번지 일원	농림 지역	생산 관리지역	16,647	8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 으로 변경함
4	가조면 동례리 392-1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26,456	8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함
5	가조면 동례리 1022번지 일원	농림 지역	생산 관리지역	5,019	8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 으로 변경함
6	가조면 동례리 335-10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2,297	80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함
7	가조면 마상리 697-5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1,148	8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함
8	가조면 수월리 577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10,823	80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함
9	가조면 일부리 951-2번지 일원	농림 지역	계획 관리지역	26,274	100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함
10	가조면 일부리 949번지 일원	농림 지역	계획 관리지역	2,848	10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 으로 변경함

11) 가조면(계속)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1	가조면 일부리 566-1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19,065	8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함
12	가조면 석강리 158-1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26,330	80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함
13	가조면 도리 574번지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529	80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함
14	가조면 기리 1180-1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9,664	8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함
15	가조면 일부리 1232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26,791	80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함

12) 가북면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가북면 우혜리 1469번지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334	80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함
2	가북면 우혜리 1477-1번지 일원	농림 지역	생산 관리지역	29,077	8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함
3	가북면 우혜리 1463-5번지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724	80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함
4	가북면 우혜리 1713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94,657	80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함
5	가북면 우혜리 1734-1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29,796	8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함
6	가북면 용산리 734-1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10,558	80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함
7	가북면 용산리 산118-16번지	농림 지역	보전 관리지역	525	80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함

거창군 고시 제2023-22호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고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거창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8일

거창군수

1. 고시일자 : 2023. 2. 8.
2. 고시방법 : 거창군보, 거창군 홈페이지, 게시판
3. 고시내용 : 건물번호판 제작 비용
4. 적용기간 : 2023. 2. 8. ~ 변경에 따른 고시일까지

구분		규격 및 재질(mm)	제작비용(원)	번호판예시
일반용	길급	260×215mm 고휘도반사지	10,000	
	대로 및 로급	400×320mm 고휘도반사지	18,000	

※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 건물번호판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토지정보담당(☎940-33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2. 8.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길 260-45 등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4)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도로명 등의 고시 및 고지)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도로구간 변경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8일

거창군수

1. 고시일자 : 2023. 2. 8.

2. 고시방법 : 거창군보, 거창군 홈페이지,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참조

※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및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

4. 참고사항

- 도로구간의 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일 2023년 2월 8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민원소통과(☎055-940-3314)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구간 변경 조서

일련 번호	행정 구역	구 분	도로명	도로구간		중양선	건물 번호	사물 주소	도로구간 변경 사유	비 고
				시작지점	끝지점					
1	신원면	변경 전	원동길	신원면 수원리 702 (원동길 123)		도면참조	1	없음	종속구간 생성	직권
		변경 후	원동길	신원면 수원리 702 (원동길 123-1)	신원면 수원리 691 (원동길 123-40)	도면참조				

주소정보기본도



위성사진



일련 번호	행정 구역	구 분	도로명	도로구간		중양선	건물 번호	사물 주소	도로구간 변경 사유	비 고
				시작지점	끝지점					
2	거창읍	변경 전	주곡로	거창읍 서변리 1 (주곡로 236)		도면참조	1	없음	종속구간 생성	직권
		변경 후	주곡로	거창읍 서변리 1 (주곡로 236-1)	거창읍 서변리 325-10 (주곡로 236-176)	도면참조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2. 개정이유

- 가. 농촌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라 만성화된 농촌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 나. 농촌일손부족 대책협의회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업인 등에게 재정 지원 근거 등을 마련

3.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1조~제3조)
- 나.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정함(안 제4조)
- 다. 농촌일손부족 대책협의회 기능·구성 등을 정함(안 제5조~제11조)
- 라. 농촌인력중개센터 기능 등을 정함(안 제12조)
- 마. 농촌인력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을 정함(안 제13조)
- 바. 지원 신청 등을 정함(안 제14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예고기간 : 2023. 2. 3. ~ 2. 2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2. 21.(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하는 곳 : 거창군청 전략담당관

1)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2층 전략담당관

2) 전화 055)940-3372, 팩스 055)940-8904, 이메일 bonagy87@korea.kr

7.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전략담당관 농촌일손담당

【☎(055)940-33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1부.

2.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안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의견 제출서**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붙임 2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가 농업 관련 작업(이하 “농작업”이라 한다)을 위해 고용하거나 참여하게 한 사람(이하 “농작업 참여자”라 한다)을 말한다.
3.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0호의2에 따른 계절근로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거창군 농촌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농촌인력 지원 시책 및 활성화 방안
3. 농촌인력의 교육 훈련
4.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과 지원
5. 농촌 일자리 홍보와 정보제공
6.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유휴 노동력 확보와 활용
7.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및 관리·운영
8.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일손부족 대책협의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농촌일손부족 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
2. 지역 영농 구인·구직 확대 방안
3. 그 밖에 군수가 농촌 인력확보 정책 등에 관하여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농촌일손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 가. 농업인 등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추천한 사람
 - 나. 농촌인력 중개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농촌일손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둬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농촌인력중개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농촌인력난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이하 “중개센터”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중개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2. 농업 관련 구인·구직 등록, 취업알선·연계
 3.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4. 농촌인력의 관리·지원
 5.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농업 고용서비스 표준안 개발 및 보급
 7. 농업 자원봉사자 관리·지원
 8.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운영
 9. 그 밖에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군수는 중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센터의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 ① 군수는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등 주거환경 개선
2. 농촌인력난 해소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추진을 위한 국외 출장 시 필요한 비용

② 군수는 농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2.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에 한정하여 다음 각 목의 지원
 - 가. 산업재해 및 상해 보험료
 - 나. 교육비, 피복비, 숙박비 및 식자재비, 농작업 안전물품
3. 내국인 고용에 한정하여 다음 각 목의 지원
 - 가. 출퇴근 교통비 또는 차량
 - 나. 중개센터를 통해 농작업 참여자를 이용할 경우 식비

③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입국이나 출국(「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査證) 발급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록에 드는 비용
3. 감염병 방역 및 격리 비용, 의료비(「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지원 신청 등) ①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요건에 부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상시고용인력센터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촌인력중개센터로 본다.

붙임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 가.~마.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 가.·나. (생략)
- 7. 국제교류 및 협력
 - 가.·나.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29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2. 11.] [대통령령 제33028호, 2022. 12. 6., 일부개정]

제2조(적용 제외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중 같은 영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같은 영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 및 20의2. 계절근로(E-8)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영 별표 1의2 중 28. 관광취업(H-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070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
2.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 되거나 발생한 사람
4. 제12조제1항·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5.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6.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7. 제14조제3항(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8.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9.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추가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알선한 사람
10.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 10의2. 제26조를 위반한 외국인
11.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12.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 12의2. 제33조의3을 위반한 외국인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4. 제7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 또는 제14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教唆) 또는 방조(幫助)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3. 1. 10.>

장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20의2. 계절근로 (E-8)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수확(재배·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현행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 2012.03.26 조례 제2071호

(전부개정) 2019.10.08 조례 제253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에게 연중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농업근로자의 생계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작업 참여자”란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통하여 농업관련 작업에 참여한 사용자 및 농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이하 “농업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농촌고령화에 따른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업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작업 참여자의 책무) 농작업 참여자는 상호간의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센터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5조(상시고용인력센터 설치 및 위치) ① 군수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의 시설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 및 상담 등을 위한 공간: 거창군 거창읍 시장1길 20
2. 농업근로자를 위한 숙박시설: 거창군 웅양면 화평길 6

제6조(센터의 기능 및 운영) ①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인·구직 상담 및 신청서의 접수·처리
2. 관외 인력유치사업 상담 및 알선, 농작업 참여자 교육
3. 농작업 참여자를 위한 지원 사업

가. 숙식비, 출퇴근 편의를 위한 차량 운행 등

나. 보험료, 안전용품 제공

다. 마일리지 제공 등 농작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②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및 운영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개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 센터에서 지원하는 농작업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자: 농가, 영농작목반, 농업법인, 농산물 선별장 등
2. 농업근로자

제8조(지원 신청) ① 제7조제1호의 사용주는 제6조제1항제3호의 지원을 받으려면 센터에 필요한 인력과 작업내용 등을 사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7조 각 호의 농작업 참여자는 농작업을 마친 후 센터에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관련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공고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제25조 등에 따라 건설공사 시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거창군청 문화관광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2. 8.

거 창 군 수

1. 대상문화재

연번	종목	문화재명	소재지
1	유형문화재	거창 무릉리 정씨고가	거창군 남하면 무릉3길 19-16 (무릉리)
2	기념물	거창 무릉리 고분군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산298-1 외
3	문화재자료	거창 영빈서원	거창군 남하면 무릉2길 34 (무릉리)
4	문화재자료	거창 낙영재	거창군 무릉2길 30-7 (남하면, 약영제)
5	문화재자료	거창 소진정	거창군 신원면 구사리 1036-1
6	문화재자료	거창 임청정	거창군 신원면 구사리 1037-2 외

2. 취지

-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 행위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명시화함에 따라,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수립하여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의 범위를 사전에 고시하여 행정 예측의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작성내용 : 붙임의 허용기준안 참고

4. 공고기간 : 2023. 2. 8. ~ 2023. 2. 28.(20일간)

5. 허용기준안 마련에 따른 업무처리

- 허용기준 내 건설공사(개발 및 건축행위 등) : 거창군청 문화관광과 협의를 거쳐 처리
-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도지정문화재) 심의를 거쳐 허가를 득한 후 행위 가능

6. 의견제출

- 제출기간 : 공고기간 만료일(2023년 2월 28일) 18:00까지
 - 제출방법 : 서면제출(붙임 의견서 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방문, 우편접수 등
 -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기재
 - 제출장소
 - 방문 : 거창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
 - 우편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상림리), 거창군청 문화관광과
- ※ 문의처 : 거창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055-940-34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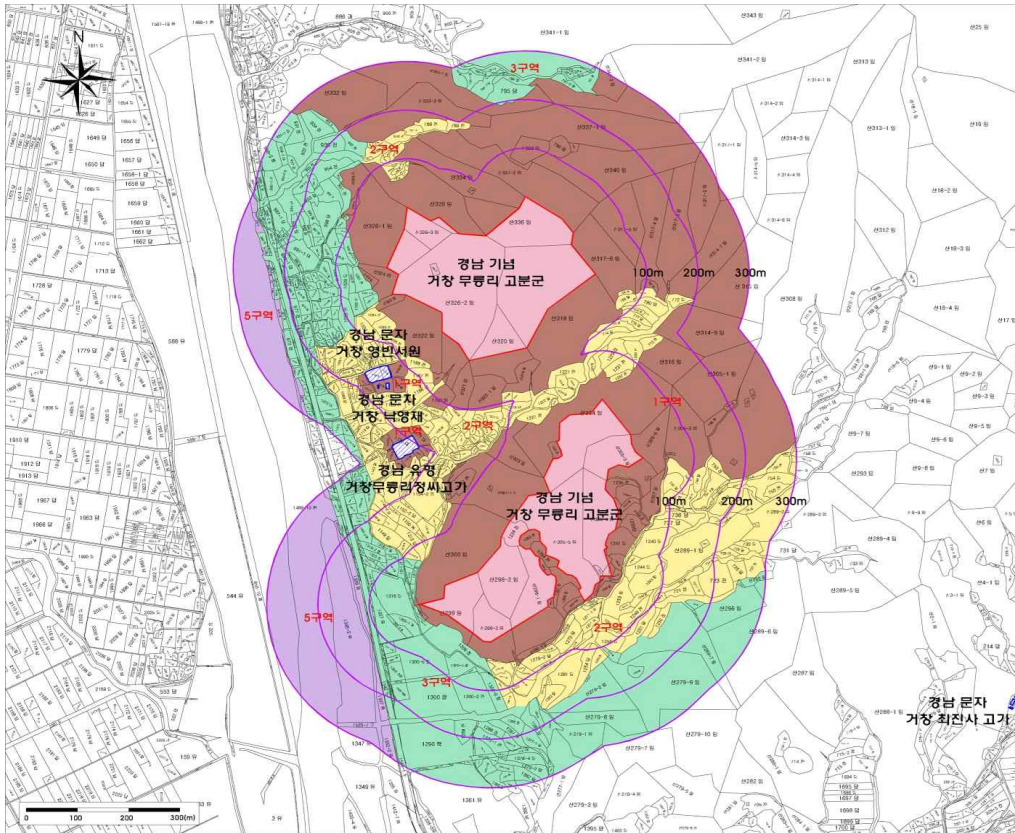
붙임 1. 도지정문화재 허용기준안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붙임 1>

도시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 거창 무릉리 정씨고가 외 3개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현지조사 의견안)

기념물
거창 무릉리 고분군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산298-1 외

범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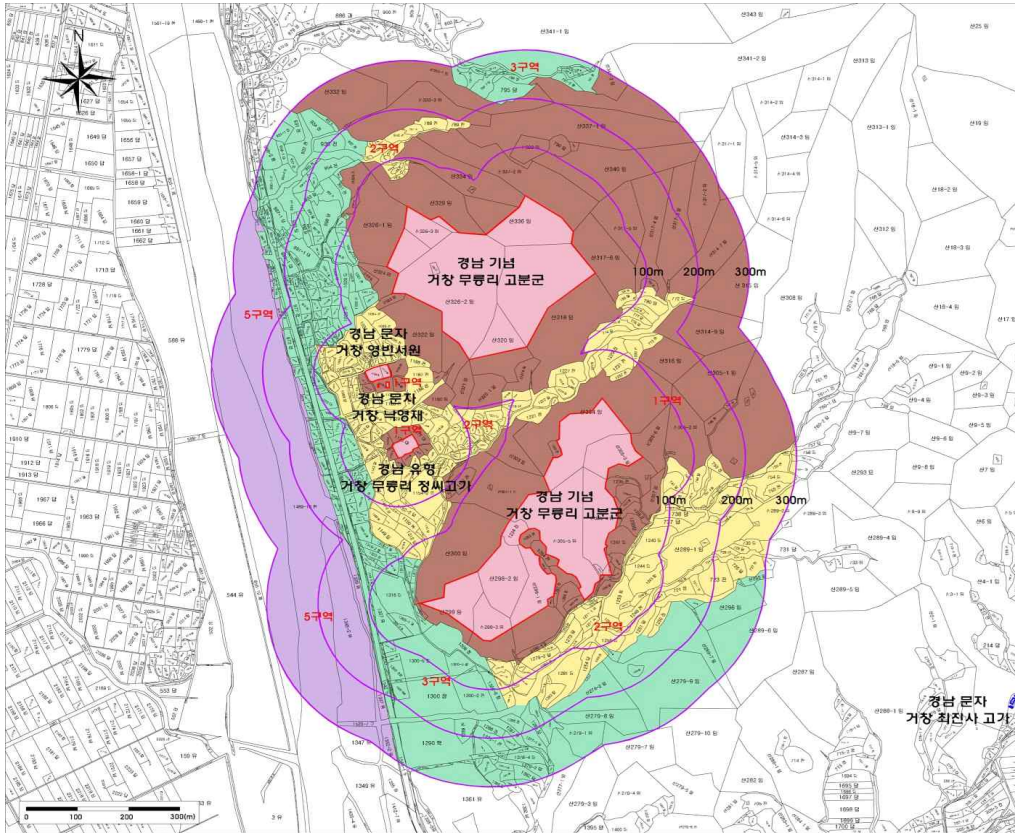
- 문화재지정구역
- 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
- 연속지적
- 100 ~ 300(m)

[허용기준구역]

구분	종류분	허용기준
	경사지(10:3 이상)	
1구역	기초시설 및 대문, 계곡, 울타리 시설 (유목은 기존 고목의 연면적 70% 이내)	
2구역	개교를 대표하는 국가지표 건축물 외고높이 7.5m 이하 (문물, 단상형제사 등 제외)	
3구역	수원역에 도동문화유산 거점 건축물 외고높이 15m이하 (문물)	
5구역	거창군 도시계획조례 및 관광진흥법 제24조 제1항	

공통 사항
 1구역 및 2구역에서 한 번의 높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건축을 금지한다
 모든 교량 등 임시 유서된 시설물의 상향 및 확장도 조율하여야 한다
 건축행위 시 사용 용지나 용 해충기준의 적용과거는 건축 행위 기준으로서 건담 및 시설물(건축물의 구조·용도, 외형 등)에 준하여 기존 건축물 1구역과 2구역에 준하여 적용한다
 건축행위 시 용지나 용 해충기준의 적용과거는 건축 행위 기준으로서 건담 및 시설물(건축물의 구조·용도, 외형 등)에 준하여 기존 건축물 1구역과 2구역에 준하여 적용한다
 건축행위 시 용지나 용 해충기준의 적용과거는 건축 행위 기준으로서 건담 및 시설물(건축물의 구조·용도, 외형 등)에 준하여 기존 건축물 1구역과 2구역에 준하여 적용한다
 건축행위 시 용지나 용 해충기준의 적용과거는 건축 행위 기준으로서 건담 및 시설물(건축물의 구조·용도, 외형 등)에 준하여 기존 건축물 1구역과 2구역에 준하여 적용한다

축척 1 : 6,500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현지조사 의견안)

유형문화재 거창 무릉리 정씨고가
기념물 거창 무릉리 고분군
문화재자료 거창 영빈서원
문화재자료 거창 낙영재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산298-1 외

범례

- 문화재지정구역
- 연속지적
- 100 ~ 300(m)

[허용기준구역]

구분	종류분	허용기준
	경사지(10:3 이상)	
1구역	기초시설 및 대문, 계곡, 울타리 시설 (유목은 기존 고목의 연면적 70% 이내)	
2구역	개교를 대표하는 국가지표 건축물 외고높이 7.5m 이하 (문물, 단상형제사 등 제외)	
3구역	수원역에 도동문화유산 거점 건축물 외고높이 15m이하 (문물)	
5구역	거창군 도시계획조례 및 관광진흥법 제24조 제1항	

공통 사항
 1구역 및 2구역에서 한 번의 높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건축을 금지한다
 모든 교량 등 임시 유서된 시설물의 상향 및 확장도 조율하여야 한다
 건축행위 시 사용 용지나 용 해충기준의 적용과거는 건축 행위 기준으로서 건담 및 시설물(건축물의 구조·용도, 외형 등)에 준하여 기존 건축물 1구역과 2구역에 준하여 적용한다
 건축행위 시 용지나 용 해충기준의 적용과거는 건축 행위 기준으로서 건담 및 시설물(건축물의 구조·용도, 외형 등)에 준하여 기존 건축물 1구역과 2구역에 준하여 적용한다
 건축행위 시 용지나 용 해충기준의 적용과거는 건축 행위 기준으로서 건담 및 시설물(건축물의 구조·용도, 외형 등)에 준하여 기존 건축물 1구역과 2구역에 준하여 적용한다
 건축행위 시 용지나 용 해충기준의 적용과거는 건축 행위 기준으로서 건담 및 시설물(건축물의 구조·용도, 외형 등)에 준하여 기존 건축물 1구역과 2구역에 준하여 적용한다

축척 1 : 6,500

▼ 허용기준안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기존건물 범위 내 개축, 증축 허용(증축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 10% 이내)	
2구역	◦거창군을 대표하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수렴하여 도문화재위원 개별심의.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5구역	◦거창군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구역 및 2구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도문화재위원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도문화재위원 개별심의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 적용(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의 지역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도문화재위원 개별심의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구역 색채(1구역:빨강, 2구역:노랑, 3구역:초록, 4구역:파랑, 5구역:보라) ◦기존 작성된 국가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 포함) 및 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포함)의 구역을 도면에 모두 작성(표기)할 것.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와 최고 높이 30m이상(시설물, 구조물 등 포함) 건물은 개별심의 	

▼ 허용기준안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건물 범위 내 개축, 증축 허용(증축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 10% 이내) 	
2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창군을 대표하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수렴하여 도문화재위원 개별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5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창군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구역 및 2구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도문화재위원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도문화재위원 개별심의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 적용(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의 지역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도문화재위원 개별심의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구역 색채(1구역:빨강, 2구역:노랑, 3구역:초록, 4구역:파랑, 5구역:보라) 기존 작성된 국가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 포함) 및 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포함)의 구역을 도면에 모두 작성(표기)할 것.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와 최고 높이 30m이상(시설물, 구조물 등 포함) 건물은 개별심의 	

<붙임 2>

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에 대한 의견서

의견 제출자

- 주 소 :
- 성 명(법인, 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의견내용

○ 의 건 사 항

-

상기 본인은 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3. . .

의견제출자 : (인)

거창군수 귀하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공고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조기철거 및 비용지원을 통해 군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8.

거 창 군 수

1. 사 업 명 :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3. 2. 8. ~ 2023. 3. 3. (24일간)
3. 접 수 처 :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4.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5. 사업물량

구 분	주택 슬레이트 처리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사업량	337동	31동	39동

6. 지원기준

○ 지원 분야별 기준

- 주택 철거·처리 : 주택 부지내 부속건물을 포함
- 비주택 철거·처리 : 주택부지 외의 건축용도가 창고·축사인 건축물
- 주택 지붕개량 : 당해연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따라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건축물 대장 기준 주택만 지원 가능, 비주택은 개량지원 불가

○ 미등재(무허가)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지원 가능

다만,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간 민원 또는 법적분쟁 가능성 등이 예상될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이 부적합한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적법한 절차에 따른 보관 슬레이트 폐기물

「산업안전보건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여 슬레이트가 해체·철거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보관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는 운반·처리비 집행 가능

* 석면해체제거업자 철거계약서 및 공사대금거래서,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증명서(지방고용노동관서), 자연재난피해신고서(지자체), 화재신고서(소방서) 등

-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동(棟)당 지원
- 건축용도는 현재 사용 중인 용도가 아닌 처음 설계된 용도로 구분
- 주택의 부지 내에 부속건물(등재 또는 미등재)이 있는 경우 부속건물을 포함하여 주택 1동(棟)으로 지원
-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부지내 부속 건물은 동일 주택으로 간주)은 중복지원 불가

7. 지원금액

구 분	주택부지 내(지붕개량은 주택만)		주택부지 외
	주택 철거·처리	주택 지붕개량	면적 200㎡ 이하인 측사·창고 철거·처리
우선지원 가구	1동당 전액 지원	1동당 10,000천원 한도내 지원	· 건축용도가 측사·창고인 건축물로 1동당 200㎡ 이하 전액 지원
일반가구	1동당 3,520천원 범위내 소규모 주택 우선지원 ※ 잔여예산 있을시 최대 7,000천원* 지원	1동당 3,000천원 한도내 지원	

* 1차 선정자 사업추진 후 잔여 예산으로 사업비 3,520천원 초과자 최대 7,000천원 지원

** 잔여 예산 없을시 초과분은 자부담

8. 대상자 선정 기준

구 분		우 선 순 위
주택 철거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④ 일반가구(작은 규모 우선 지원)
지붕 개량	우선지원가구 (12동)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일반가구 (19동)	작은 규모 우선 지원
비주택 철거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④ 일반가구(작은 규모 우선 지원)

※ 신청수량에 따른 예산 내 사업량 변동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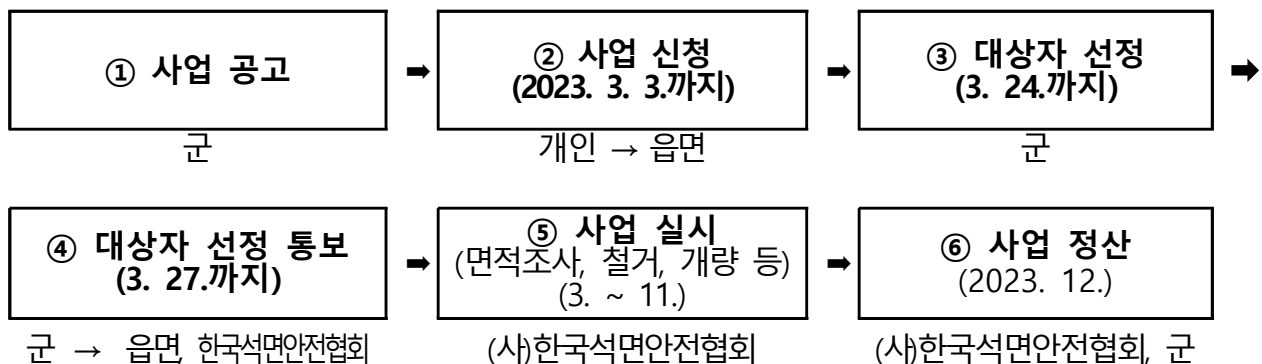
9. 신청서류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지원 신청서 1부.
- 사업이행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사실확인서(미등재(무허가) 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1부.
- 사실확인서(건축주와 신청자가 다른 경우 해당) 1부.
- 소유권확인 가능 서류(사실확인서 제출하는 경우 해당하며, 건축물 대장, 과세대장 등) 1부
- 우선지원가구 증빙 서류(우선지원가구인 경우 해당, 수급자 증명서 등)

10. 사업추진방법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은 위탁사업자가 선정한 공사업체가 시행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공사업체에 지급
- 개인이 공사업체 선정 불가
- 슬레이트와 무관한 건축 폐기물 처리비용은 신청자 자부담 처리
- 신청자 본인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을 하였을 경우 지원 불가
- 신청자가 보조금 지원여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착공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후순위로 변경

11. 추진절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있을 수 있음

12. 기타

-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사업비가 보조금 최대 지원금액 초과 시 초과분 자부담
- 임의 처리 및 개량 후 신청 불가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사업 선정 배제
- 동일인이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¹ 동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지원
- 관련서류는 건축물 소유자가 제출. 다만 불가피하게 거주자(가족, 임차인) 등이 소유자를 대신하여 제출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차계약서 등 추가 제출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은 환경부 「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며, 문의 사항은 거창군청 환경과(☎055-940-3493) 및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문의

- 붙임 1.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지원 신청서 1부.
2. 사업이행 동의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4. 사실확인서(미등재(무허가) 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1부.
 5. 사실확인서(건축주와 신청자가 다른 경우) 1부.
 6. 포기서 1부.
 7. 참고자료(기준중위소득표) 1부. 끝.

[붙임1 서식]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서

신청자 현황	성 명	연락처(h.p)			
	소재지 (현재 거주지)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소재지 (슬레이트 건축물 주소)				
	건축연도	슬레이트 면적(㎡)			
	건축 연면적(㎡)	계	주건물	부속건물()	기타건물
	관리유형	자가□, 임차□	거주현황		거주□, 빈집□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등재□, 미등재□			
가구유형	기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일반□				
지원신청 내용	주택 철거□,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창고·축사) 철거□				
지자체에 위임하는 내용	<p>신청자는 신청받은 지자체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 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단, 본인부담금은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진행절차</p> <pre> graph LR A["지원신청서 제출 건축물 소유주 → 지자체"] --> B["지원대상 선정 지자체"] B --> C["공사업자 선정 지자체"] C --> D["면적조사를 포함하여 공사 등 수행 선정된 공사업자"] D --> E["공사업료 후 보조금 지급 지자체 → 공사업자"] </pre> </div>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p>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슬레이트 면적조사 및 철거일정 협의를 목적으로 지자체가 선정한 공사업체에게 '성명, 주소, 연락처' 정보를 제공(보유기간 1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p> <p>※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하고 위 위임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3. . .</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건축물 소유주 : (서명 또는 인)</p>					
거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p>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소유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자격해당(기초·차상위·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p>				

※ 건축주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건축주 서명 또는 날인

[붙임1 서식의 첨부]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현황			
성 명		소재지	
위치도			
사진 현황			

※ 철거 대상 건축물이 1개동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동의 사진을 첨부

[붙임2 서식]

사업이행 동의서

사업명 : 2023년 거창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연계사업명:)

성명 :

주소 :

연락처 :

위 본인은 2023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지원가능 여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미이행으로 간주하여 대상자 선정이 취소 또는 후순위로 변경됨에 동의합니다.

2023. . .

성명 :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거창군은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자들에 대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 제공하는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건축물현황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이용목적 완료시 까지
-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사업대상자 선정 등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
-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성명, 연락처 등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이용목적 완료시 까지
-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사업대상자 선정 등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계약업체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2023년 거창군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건축물현황 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이용목적 완료시까지
-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사업대상자 선정 등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3년 월 일
성 명: (인)

거창군수 귀하

사 실 확 인 서

○ 건축물 주소 :

○ 실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소유권 확인 :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과세대장□, 기타()

건축물 용도	소유자	면 적(m ²)	건축연도	비 고

※ 반드시 소유권 확인 서류 첨부

○ 건축주와 신청자 관계 :

 ※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 첨부

○ 건축주와 신청자 상이한 이유 :

 건축주 사망□, 상속등기과정□, 기타□(사유기재:)

상기 본인은 사실상 소유권이 변경(취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공부상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실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하며, 사실이 아닌 경우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 (인)

관련자(상속권자 등) : (인)

거창군수 귀하

※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상속권자 모두의 철거 동의서 징구

[붙임6 서식]

포 기 서

신청내역

- 성 명 : (생년월일 :)
- 연락처 :
- 주 소 :

상기 본인은 거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업참여를 포기하고자 본 포기를 제출합니다.

포기사유 (해당란에 “V”표시)

처리 및 지붕개량 자부담금 , 사업시기,
기타 (사유 :)

2023년 월 일

위 포기자 : (인)

거창군수 귀하

[붙임 7 - 기준중위소득표]

○ 기준순위소득 100%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인	2,494,000	88,753	26,673	-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인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인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인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인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인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2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2. 개정이유

- 가. 유통센터운영위원회의 위촉위원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참여하여 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정책결정을 위하여 위촉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 나. 위원회 심의의 객관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하고 해촉사유를 명시함

3. 주요내용

- 가. 위촉위원 수를 변경함(안 제8조)
 - 1) 위원 수 : 15명 이내 → 20명 이내
 - 2) 위촉위원 중 생산자단체 및 출하농가 대표 : 2명 → 7명
-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을 신설함(안 제9조의2, 제9조의3)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예고기간 : 2023. 2. 2. ~ 2 2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2. 21.(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하는 곳 :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 1) 주소 : (우50147)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 2층 농업기술과
- 2) 전화 055)940-8262, 팩스 055)940-8179, 이메일 hmp1234@korea.kr

7.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수출유통담당[☎(055)940-82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붙임 2]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15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호선”을 “호선(互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명”을 “7명”으로 한다.

제9조의2와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9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거창군·함양군·합천군의 각 유통센터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창군의회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생산자단체 및 출하농가의 대표 2명 3. 함양·합천군수가 추천하는 사람(3명 이내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농산물 유통분야 전문가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p> <p>③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거창군·함양군·합천군의 각 유통센터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p> <p>▷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 정비 대상: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재기재로 삭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창군의회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생산자단체 및 출하농가의 대표 7명 3. 함양·합천군수가 추천하는 사람(3명 이내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농산물 유통분야 전문가 <p>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u> 2. <u>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u> 3. <u>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u> 4. <u>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u> <p>② 심의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p>

현 행	개정안
<p data-bbox="655 696 783 734"><신 설></p>	<p data-bbox="810 286 1422 465">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 data-bbox="810 472 1422 645">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p> <p data-bbox="810 696 1422 824"><u>제9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u></p> <ol data-bbox="810 831 1422 1189"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관계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25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물의 선별·포장·규격출하·가공·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9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222

2) 위원회의 구성

나) 위원회의 구성 규정

~위원 중 특정 성별의 비율을 정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조례에도 적용되므로 조례에 재기재하지 않도록 한다.~

□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P35

차. 굳어진 용어는 그대로 쓰기

▷정비기준

- 쉬운 말로 바꿀 경우 그 법적 의미를 온전하게 살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굳이 순화하지 않고 종전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 해당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면 괄호에 한자를 함께 쓴다.

▷호선(互選)하다

- ‘호선’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이 서로 투표하여 그 조직 구성원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람을 뽑다’이다. 어려운 한자어지만 이를 단순히 ‘선출하다’로 바꾸면 누가 뽑는지

(선출 주체), 어떤 절차로 뽑는지(선출 방법) 등이 드러나지 않아 선출의 주체와 방법을 추가로 규정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회의 용어로 굳어진 단어이므로 관용을 존중하여 그대로 쓴다.

거창읍 공중화장실 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거창읍사무소 환경담당에서 공중화장실 관리를 수행할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6일

거창읍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부서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거창읍 (환경담당)	기간제근로자	2명	- 공중화장실 관리 (화장실 청소 및 시설 관리)

※ 해당 근무기간 이후에 계속 고용(갱신)을 보장받는 것이 아님

2. 응시자격 요건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거창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에 따라 준용되는 「거창군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 상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거창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11조 >

-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③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④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⑤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⑥ 법원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⑦ 징계에 의하여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⑧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나.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다. 청소업무 수행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

3. 근무조건

가. 신 분 : 기간제근로자

나. 채용기간 : 2023. 3. 1. ~ 2023. 12. 31.

다. 근무조건

1) 주 7일(월 ~ 일요일 근무), 토·일·공휴일 근무

2) 1일 4시간 정도(09:00~18:00 시간내)

라. 보 수 : 1일 40,460원 정도(주휴, 연차수당, 4대보험 가입)

마. 근무내용 : 거창읍 공중화장실 관리 등

바. 근무부서 : 거창읍행정복지센터 환경담당

4.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심사

1) 자격증 소지여부, 응시연령 등 확인

2)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출 서류에 의하여 심사

3) 자기소개서 등 심사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나. 이력서 1부

다. 자기소개서 1부

라.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마.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 초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바. 응시제한 확인 동의서 1부

사.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공중화장실 청소 등의 분야에 근로한 경력만을 제출

- 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해당자)
- 자.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 차. 결격사유 확인서 1부
- 카.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원본(지참) : 본인 확인용)
- 타. 채용신체검사서(최종합격자)

- ☞ 서류 작성요령과 제출기준 등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 ☞ 위 순서대로 제출하되 스테이플러 등을 사용하여 편철하지 마십시오.
- ☞ 제출서류 중 응시자 서명 란에는 반드시 서명 후 제출 하십시오.
- ☞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하는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함

6. 원서 접수 및 채용일정

- 가. 공고기간 : 2023. 2. 6.(월) ~ 2. 13.(월)
- 나. 원서접수 : 2023. 2. 14.(화) ~ 2. 16.(목) 3일간
09:00 ~ 18:00 ※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다. 접 수 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90, 거창읍행복복지센터 지역
산업과 환경담당(☎ 940-7323)
- 라. 접수방법 :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제출(대리접수 불가)
- 마. 서류심사 : 2023. 2. 17.(금)
- 바. 면접심사 : 2023. 2. 22.(수)
- 사. 합격자 발표 : 2023. 2. 24.(금) 개별통보(합격자에 한함)
※ 위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7.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나.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다. 본 채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

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라. 지정된 일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마.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바. 시험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사. 위 내용 이외의 사항은 『거창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아. 채용공고에 따른 실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불합격자 중 채용서류 반환희망자는 최종합격 발표 다음날로부터 14일 안에 채용서류반환청구서를 작성 후 방문 접수한 후, 서류제출자 본인이 직접 방문 수령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채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거창읍행정복지센터 지역산업과 환경담당 (☎055-940-7322)으로 문의바랍니다.

[서식1]

거창읍 공중화장실 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응시 제출서류 목록표

응시분야		응시번호	생년월일	성명
부서	거창읍행정복지센터	(담당자 기재)		
분야	공중화장실 관리 기간제근로자			

연번	제출 목록	제출여부
1	응시원서 ▷ [서식2]	
2	이력서 ▷ [서식3]	
3	자기소개서 ▷ [서식4]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서식5]	
5	주민등록초본 ▷ 초본 : 최근 5년 주소변동내역 발급,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6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8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9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0	결격사유 확인서 ▷ [서식6]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 “○” 표시

[서식2]

응시원서

본인은 거창읍에서 시행하는 2023년 공중화장실 관리 기간제근로자 모집에 지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선발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합격이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 2월 일
제출인 (서명)

※접수번호	※담당자기재	성 명		사 진 (1)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 × 4.5cm)
응시사업	공중화장실 관리 (청소 및 시설관리)	연락처	휴대폰 :	
생년월일			전화 :	
주 소	거창군			
첨부서류	서류 제출목록 참조			

《작 성 요 령》

- ① 응시사업명 : 당해 시험 공고의 응시사업을 기재한다.
- ② **※접수번호 : 응시자는 기재하지 않는다.**
- ③ 성명 · 생년월일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한다.
- ④ 주 소 :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한다.
- ⑤ 사 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이어야 한다.
- ⑥ 응시원서 등은 응시자 본인의 자필 또는 워드로 작성한다.
- ⑦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거창읍장 귀하

응 시 표				2023년 2월 일 거창읍장
※ 접수번호	※담당자기재	성 명		
생년월일				
응시사업	공중화장실 관리(청소 및 시설관리)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접수번호 기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면접시험의 경우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시험요원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3]

이 력 서

사진부착

개인신상

성명	한글	생년월일	(만 세)		
	한자				
현 주소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사무실		E-MAIL		
병역	군필여부		기타사항		
	최종계급				

교육배경(고등학교 이상)

구분	내용				
학 력 및 전 공	학 교 명	입학년월	졸업년월	전 공	학 위
포상내역					

기술 및 자격

구분	내용	
면허증	종 류	등 록 번 호
어 학	종 류	점수 또는 수준
기타 보유 자격 또는 기술(전산 등)		

[서식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관련 사항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기간제근로자 채용심사(서류전형·면접시험)에 필요한 인적사항, 자격·경력확인 조회를 목적으로 함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선택항목 : 자격, 경력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 관련 문서 보존 기한 완료시 폐기처분함

라. 동의의 거부

응시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제2호에 따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필수항목 거부 시 응시가 제한될 수 있으며, 선택항목 및 제3자 제공 거부 시 가점 미부여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필수항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선택항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귀 기관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학력, 자격사항 등]

2023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또는 서명)

결격사유 확인서

본인은 거창읍 공중화장실 관리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됨에 있어 「거창군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 및 「거창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향후 허위임이 판명될 때에는 채용 취소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23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거창읍장 귀하